



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상에 대한 전통 예절

問 예전과 달라 요즘에는 상가에 문상을 하는 일이 훨씬 빈번하고도 확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남녀간의 구분이나 이른바 내외법 또한 사라진 지가 오래여서 그 예절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상주가 되기도 합니까? 딸도 마찬가지로 치고 자식이 흉상凶喪으로 죽으면 발상을 앓는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랫사람이 죽은 데 가서는 영좌靈座에 절을 앓는 것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고인과 지면이 없을 경우의 문상례는 어떤가요? 특히 내간상內艱喪의 경우 유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남녀유별의 예법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상제하고는 상대가 비록 어리더라도 반드시 맞절을 하는데 이는 옛날도 그러했나요?—**窮問子**

答 요즘 상례와 문상의 규모가 사실 커졌습니다. 아니, 상례는 대폭 간편해졌는데 문상의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예전에 문상객이 수백에 이르렀다 하면 호상豪喪이었습니다. 요즘은 문상객이 수천에 이르기까지 하여 대개 천은 넘어야 호상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는 자택에서 장상례를 치러 매우 큰일이 되고 문상객도 상가에 와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반면에, 지금은 모두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문상객도 빈소에 와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어쩌면 붐비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연인원은 예전에 비해 십배로 많아진 것입니다.

문상에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 전에 없던 새 예절도 많아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전에는 여자는 친족의 경우에만, 즉 8촌 이내의 유복친有服親의 경우만 거애擧哀로 곡을 하고 영좌에 절을 하며 상제하고도 맞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자가 혹시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해서 내외간상內外艱喪이든 간에 문상을 한다면 해괴하다고들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니 여자가 문상하는 예절이라는 게 전에는 아예 없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여자의 문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문상 예절도 남자의 것에 준해서 차별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상주가 되는 것은, 옛적에는 경우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종자宗子로서 나의 윗대의 제사를 몸받았을 경우, 그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이라

도 자기의 제사만을 잇는 아들인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식의 죽음에 아버지가 상주가 되는 것은 그 자식이 관자冠者가 아닌 동자童者로 죽었을 때입니다. 즉 성년으로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으로 죽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동冠童의 구분은 나이보다 관혼冠婚의 예를 치렀는지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령 30이 다 되었어도 시집장가를 못들었으면 동자 취급이고 11세에 죽어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성인의 예로 상례를 치러 후사를 입양해서라도 제사를 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자로 자식이 죽으면 그 아버지가 상주가 되어 제사도 자기 생전에는 내려 지내주되 그것도 8세 이전에 죽는 상喪喪의 경우 등은 초종初終 상례에 그치고 기제사忌祭祀 등은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동자로 죽는 것은 흉상凶 수밖에 없고 옛적에 이러한 흉상은 발상發喪을 아니하고 친족끼리 조용히 치르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속은 다르겠습니다. 우선 자식들이 3,40이 넘도록 결혼을 아니하고 온갖 사회활동을 하는가 하면 아예 독신으로 생평하는 수도 많으니 그런 자식이 죽었을 때 천상 부모 밖에 상주될 자가 없으니 발상하고 조문을 받는 일 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손아랫사람이 죽었을 때 문

상을 가서는 옛부터 영좌에 일곡一哭을 하여 거애하고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은 생사와 관계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죽은 자가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생시에 만났더라면 손아래가 먼저 절하고 손위가 이를 맞아야 하는데 지금 손아래가 죽어 절을 할 수 없는데 손위만 절을 해서는 실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손위일 때는 이와 반대이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등한 평교平交의 사이에도 절을 합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상주로서 모든 제사에나 영좌에나 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부는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죽었을 때 장성한 자식이 있으면 남편이 절을 앓고 자식에게 대리시키며 축문 등에도 ‘부사자夫子子：아버가 자식 아무개를 시켜서’ 운운하는 게 예사인데 이는 사실 탈법입니다. 평교의 친지 사이에 절하는 것은 생시에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것과 같아서입니다. 아랫사람의 영좌에는 절을 앓더라도 상제와는 절로 인사해야 하고 반드시 맞절을 합니다. 상대가 손자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의 상을 몸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갑절의 무거움이 있어서입니다.

고인과 전혀 지면이 없는데 상제와의 관계로 문상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많습니다. 고인이 친지 상제의 손위일 때는 절하고, 손아래일 때는 일곡, 요즘으로는 분향 또는 헌화에 목념만 하고 상제와 절을 나눕니다. 고인이 친지의 부인이거나 남편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전자에는 내외법

때문에 절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좌에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빈차殯次에서 상제와 조문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친지와 동일신으로 보고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간상·외간상이니 남녀유별이니 하는 것은 다 사라졌으니 사실상 거론할 것이 없겠습니다. 다만 현사회에서도 내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이, 즉 수숙간嫂叔間, 계수와 시아즈버니 사이가 되는 경우 등에는 그 법도에 따르지 아니하기 어렵겠지요. 요즘도 대개 그러하지만 예전에는 부고訃告를 전인편專人便으로 하고, 부고를 받으면 반드시 문상을 하되 부고가 오지 않으면 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으레 부고를 해야 할 데에 하지 않으면 의절로 인식되어 집안간에 큰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고를 받고 문상을 안가도 큰일이 되었습니다. 초종에 못가면 소상小祥이나 대상大祥이라도 반드시 갔으며, 만약 대상이 지나도 문상하지 않는 것을 ‘삼년부조三年不弔’라 하여 이런 사람과는 다시 상종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상중일 때는 남을 문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늘에 죄지은 몸으로 감히 남을 위로한다는 게 파렴치라 해서였지요. 그럴 때는 서면으로 조상하고 만사輓詞를 지어 보내거나 했습니다만, 지금은 물론 아닌 게 현실입니다. 같은 날 상가와 혼례식장을 동시에 돌아다니는 것도 통상의 일이 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전자에 부고를 삼가는 자리가 있었으니, 내간상으로서 서로 내외법에 저촉될 경우 굳이 부고를 아니하기도 했습니다.—**弔雲齋**

9면에서 계속

觀者耶 여혹이차위如或以此謂 비성인소제지례非聖人所制之禮 불필행야不必行也 우위불필행어원조즉又謂不必行於遠祖則 차부부지서지본지此夫不知書之本旨 역대유괴亦大有乖 어자성봉선지정야於子姓奉先之情也 사기가재思其可哉 금오종즉기위부군今吾宗則既爲府君 이설원야제而設原野祭 우치병사又置丙舍 위임제치재지소爲臨祭致齋之所 기어봉선지정其於奉先之情 가위무감可謂無憾 이절유소통한자而 有所痛恨者 부군이승조대승상府君以勝朝大丞相 문장훈업文章勲業 흰혁당시烜赫當時 이기사적문헌而其事蹟文獻 자성무전언子姓無傳焉 국사부지언하제國史不著焉何哉 차실위자성소통한此實爲子姓所痛恨 이반복유념而反覆惟念 문장부전文章不傳 경부지기고竟不知其故 훈업부저勲業不著 가이상득可以想得 개부군사승조말년蓋府君仕勝朝末年 시조저부정時朝著不靖 지사가거관은둔지시아志士可

去官隱遯之時也 사부군즉거관귀은肆府君即去官歸隱 불부이관인자처고不復以官人自處故편사자치부군어국의일민編史者置府君於局外逸民 불서어사야不書於史也 약이즉부군지청풍고절若爾則府君之淸風高節 즉가위백세사足可爲百世師 이사지부저而史之不著 반위자성지소영요反爲子姓之所榮耀 기불위심통한其不爲甚痛恨 황금지세시부군지세況今之世視府君之世 기부정유백매자其不靖 지지爲子姓者能體得府君之志 불화우세不化于世 이중위구국일민이이즉而終爲舊國逸民而已則 제부군지시祭府君之時 정령필현언이소왈精靈必欣然而笑曰 여기유후予其有後 자성지갱장우모子姓之羹牆慕葛 역필무조네지근묘의亦必無祖之近廟矣 이차합상여면전언以此相與勉焉 연중부로지의然宗父老之意 갱이위여하更以爲如何 이건설시자후손재민移建創始者後孫載敏 규척재처중유성취자운현規 裁處終有成就者雲

鉉 상역불태자우용급정보야相役不怠者宇容及正輔也 저용곤돈중양著雍困敦重陽 후손재춘근기後孫載春謹記 후손옥현근서後孫玉鉉謹書

아아, 이곳 금구金溝고를 상리上里的 감방坎方(정북 중심 45° 각 방향)을 등진 언덕은 우리 선조先祖 충헌공忠憲公 부군府君의 의리衣履(의관과 가죽신)를 갈무리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6백년이 넘은 바인데 중간에 거둬되는 병화를 겪으면서 한동안 전하여 수호하기를 잃어오다가 문득 서염인西靦人이 근거를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옛자리를 심득審得하여 고쳐 봉축封築하고 경건히 제향을 받들어오는 것이 지금 또한 수백년이거니와 전부터 묘하사墓下舍가 있어 추원재追遠齋라 편액扁額하여 왔다. 이를 이어오면서 한두 차례 중수重修를 했는데 지난 갑신년甲申年(1944) 봄에 자리가 이롭지 못하여 옛자리 조금 왼쪽으로 옮겨 짓고 보니 과거

보다 자못 웅장하여 가히 후대에 보아도 족히 폐단이 없다 하거곰 되었다. 낙성落成을 하게 되어 종중의 父老가 재춘載春에게 그 일을 기록하라 하였다. 돌아보건대 재춘이 어찌 감히 감당하리오마는 망령되이 묘중廟中에서 일을 보는 영광을 흠친 의리가 있는지라 삼가 자리를 옮겨앉아 복명復命하고 다음과 같이 짓는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아버에게 훌륭히 차리지 않겠느냐’ 하였으니 아버지는 곧 아버지당제사를 이르고 이는 사당이 근친近親의 것이면 제사지냄을 말한 것이요 먼 조상을 원야原野에서 제사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생각컨대 원야는 체백體魄이 의탁한 곳이요, 사당은 신혼神魂이 있는 바인지라 성인聖人이 예禮를 제정하면서 신혼을 무겁고 체백을 가볍게 한 고로 야외에서 지내는 예는 사당에서 하는 행사보다 낮추어 감쇄減殺하였다. 오직 자손이 선대를 받드는 마음으로 한다면 신혼과 체백을 다르

게 볼 수가 없고 또한 세대世代的 멀고 가까움을 가지고 그 받드는 정성과 의절을 심히 힘쓰거나 소홀히 하는 차별을 두어서는 불가함이 확실한 것 같다. 이 때문에 먼 조상으로 비록 그 신주神主가 사당에서 조천 遷이 되었더라도 체백이 깃든 곳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제사지내고 또 곁에 재사齋舍를 설치하여 제사에 임하여 이곳에서 치재致齋를 하도록 하니 이것이 어찌 앞서 말한 자손이 선대를 받들고 있어 신혼과 체백을 차이가 다르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혹시 이를 가지고 성인이 제정한 예가 아니니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한 먼 조상에게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대저 서경書經의 본지本旨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자손이 선대를 받드는 마음에 크게 어그러질 터이니 생각컨대 그리 해서 옳겠는가. 지금 우리 종중에서

11면으로 계속